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**배포 후 즉시**	배포	2021.11.23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 은 주(02-2100-1730)	**담 당 자**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

제 목 :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, 다만 결제·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.
(머니투데이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머니투데이는 11.23일 「"**NFT는 가상자산… 내년부터 과세**"」 제하 기사에서, 금융위는 **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**한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기사 제목 등에서 "**NFT는 가상자산**"이라고 **단정적으로 언급**하고 있으나,

○ 기사 내용 중 **인용된 부분**과 같이 **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**이 있으며,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**일부 해당할 가능성**이 있습니다.

□ 현실에서 **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**하고 있어 **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**을 줄 수 있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